

담양군의회규칙 제21호

공 포 문

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16일

담양군의회 의장 장 명



붙임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1부.

담양군의회규칙 제21호

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

1. 제안이유

-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와 관련하여 담양군의회 규칙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의 표기와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,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명확성 제고 및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에 관한 사항
(안 제1조)

- 윤리특별위원회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대신하는 기능 삭제

나. 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」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제3조에서 “제안”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 규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: 없음

담양군의회의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

제1조(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 중 “**존중해야**”를 “**존중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**적용한다**”를 “**따른다**”로 한다.

제2조(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」의 개정)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**지방공무원법**」 **제78조**”를 “「**지방공무원법**」 **제78조**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**적용범위**)”를 “(**적용 범위**)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**지방공무원**”을 “**담양군의회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**”으로, “**소관 담양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**”을 “**담양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**”으로, “**아니하는 것을**”을 “**않는 경우**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중전의 나목)부터 마목(중전의 라목)까지 중 “**것**”을 각각 “**경우**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(중전의 마목) 중 “**주의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**”을 “**주의 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**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및 사목(중전의 바목) 중 “**것**”을 각각 “**경우**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

나.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

아. 담양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

제4조 본문 중 “제출과제”를 “제출 과제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제안의 공동제출)”을 “(제안의 공동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공동제안자”를 “공동 제안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무원제안”을 “공무원 제안”으로 한다.

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채택여부”를 “채택 여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부상금”을 “부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채택제안의 실시성”을 “채택 제안의 실시 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전단 중 “당연직위원”을 “당연직 위원”으로, “전문분야”를 “전문 분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”을 “위촉직 위원

수의 10분의 6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**위촉직위원**”을 “**위촉직 위원**”으로, “**연임 할**”을 “**연임할**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**인정하는 경우에 이를**”을 “**인정할 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재적 위원**”을 “**재적위원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제안업무를 주관하는**”을 “**제안 업무를 주관하는**”으로, “**제안업무를 담당하는**”을 “**제안 업무를 담당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**운영세칙**)”을 “(**운영 세칙**)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**심사기준 등**)”을 “(**심사 기준 등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판단하는 경우에는**”을 “**판단할 때는**”으로, “**추정금액**”을 “**추정 금액**”으로 한다.

5. 적용 범위

제13조제1항 중 “**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**”을 “**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확인하기 위하여**”를 “**확인하는 데**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**채택제안의 결정 등**)”을 “(**채택 제안의 결정 등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공모기간**”을 “**공모 기간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채택제안으로**”를 “**채택 제안으로**”로,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, “**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**”를 “**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 제안의 시행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채택제안**”을 “**채택 제안**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**채택제안의 등급**)”을 “(**채택 제안의 등급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채택제안**”을 각각 “**채택 제안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**모범공무원 대상자**”를 “**모범 공무원 대상자**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때,”로, “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”을 “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”을 “채택 제안의 제안자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, “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제18조제2항”을 “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제18조제2항”으로, “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”을 “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채택제안의 시상)”을 “(채택 제안의 시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채택제안”을 “채택 제안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부상금”을 “부상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채택제안”을 “채택 제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4조에 따른 실시성”을 “제23조에 따른 실시 성”으로, “지급 기준”을 “지급 기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채택제안의 실시”를 “채택 제안의 시행”으로, 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”으로, “우대조치”를 “우대 조치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채택제안”을 “채택 제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채택제안의 실시”를 “채택 제안의 시행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채택제안의 실시)”를 “(채택 제안의 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실시하여야”를 “시행하여야”로, “제안실시부서”를 “제안 시행부서”로, “실시하게”를 “시행하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안실시부서”를 “제안 시행부서”로, “제안업무”를 “제안 업무”로, “제안실시계획”을 “제안 시

행 계획”으로 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안
실시부서”를 “제안 시행부서”로, “실시할”을 “시행할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
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)”을 “(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)”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”를 “채택
제안이 직접 시행하기”로, “실시할”을 “시행할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채택제안”을 “채택 제안”으로, “적용이 가능하다고”를 “적용할 수
있다고”로, “실시를”을 “시행을”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실시성과의 측정)”을 “(시행 성과의 측정)”으로 하고, 같은
조 제1항 중 “제안실시부서”를 “제안 시행부서”로, “실시성과”를 “시행 성과”
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안실시부서”를 “제안 시행부서”로, “실시성과
의 측정결과를”을 “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를”로, “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
실시성과의 측정결과”를 “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시행 성과의 측정 결
과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관리기간)”을 “(관리 기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채택제
안”을 “채택 제안”으로, “공무원제안”을 “공무원 제안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위임사항)”을 “(위임 사항)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제외한다)을”을 “제외한다) 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자문위원회는 「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	<삭 제>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	제10조(의견수렴) ----- ----- ----- 존중하여야 --.
제12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적용한다.	제12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따른다.

제2조(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지방공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 무원법」 제78조-----

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(考案)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(생략)

제3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안“이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담양군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·서비스·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<신 설>

[illegible]

제2조(적용 범위)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정의) -----
-----.

1. ----- 담양군의회 공무원
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-
----- 담양군의회 의장
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-----

않는 경우를 --
-----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

나.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

- 나.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- 다.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라.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- 마.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- 바.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<신 설>

2. 3. (생 략)

제4조(제안의 제출)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. 다만,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

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

- 다. -----
- 경우
- 라. -----
- 경우
- 마. -----
- 경우
- 바. -----
- 주의 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 --- 경우
- 사. -----
- 경우

아. 담양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제안의 제출) -----

-- 제출 과제-----
-----.

기간 내에 제출한다.

제5조(제안의 공동제출) 2명 이상 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“주제안자”로, 그 밖의 참여자를 “부제안자”로 표시하되,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안의 접수 등) <신 설>

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.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
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 제안

-----.

제5조(제안의 공동 제출) -----

때에는 -----

-----.

----- 공

동 제안자-----

-----.

제6조(제안의 접수 등) ① 의장은

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 한다.

③ ----- 공무원 제안

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 제안
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
공무원 제안이 우선한다.

④ (생 략)

제7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(생
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심의한다.

1.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
정
2.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
지급 결정
3.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
가 등에 관한 사항
4. (생 략)

제8조(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(생 략)

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
사무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
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, 대
학교수,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
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
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. 이
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
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
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
다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 채택 여부 -----
--
2. ----- 부상 -----

3. 채택 제안의 실시 성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당연직 위원-----

----- 전문 분야-----

-----.

--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--

--.

③ (생 략)

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(생 략)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,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(생 략)

제12조(심사기준 등)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5. 적용범위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촉직 위원-----
----- 연임할 ----
----.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-----

인정할 때 -----

-----.

② ----- 재적위원 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제안 업무를 주관
하는 -----
--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----
-----.

제11조(운영 세칙)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심사 기준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적용 범위

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(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)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조회 등)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,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·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「특허법」·「실용신안법」·「디자인보호법」 또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4조(채택제안의 결정 등)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(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)부터 1개월

② ----- 판단할 때는 -----
----- 추정 금액-----

-----.

제13조(의견조회 등) ① -----

-----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
관계 기관 -----

-----.

② -----

확인하는 데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채택제안의 결정 등) ① -----

----- 공모 기간-----

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·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.

제15조(채택제안의 등급) ① 채택 제안의 등급은 금·은·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. 다만,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「상훈법」·「정부 표창 규정」·「지방공무원법」 및

-----.

② ----- 채택 제안으로

때는 ----- 관리 기간
의 범위에서 채택 제안의 시행

③ 채택 제안-----

--.

제15조(채택 제안의 등급) ① 채택 제안-----
-----.

-----.

② -----
----- 채택 제안-----

「모범공무원 규정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·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16조(인사상 특전)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(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(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제18조제2항에

모범 공무원 대상자-----
---.

제16조(인사상 특전) ① -----
공무원-----

----- 때, -----

-----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-----
---.

② ----- 채택 제안의 제안자가

-----.

③ -----
----- 공무
원-----
----- 「공무
원 제안 규정」 제18조제2항--

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
우를 포함한다) 인사 관계 법령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
진 또는 특별승급(제1항에 따라
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
는 제외한다)의 인사상 특전을
부여할 수 있다.

제17조(채택제안의 시상) 의장은
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
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
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
다.

1. ~ 4. (생략)

제18조(상여금의 지급) ① 의장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
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른 실
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
지급하되, 상여금 지급기준은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
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9조(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)

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
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

----- 특별 승
진 또는 특별 승급-----

-----.

제17조(채택 제안의 시상) ----
채택 제안-----
범위-----
----- 부상-----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상여금의 지급) ① ----

--- 채택 제안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23조에 따른 실시
성-----
----- 지급 기준-----

-----.

제19조(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)

① -----

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단,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제 6 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

제20조(채택제안의 실시)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(이하 “제안실시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-----

----.

② ----- 채택 제안의 시행-----
----- 「지
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제13조제1항 -----

----- 우대 조치-----
----- . ----- 채택 제안

--.

----- 채택 제안의 시행 -----

제20조(채택 제안의 실시) ① ---

----- 시행하여야 --
-----제안 시
행부서-----
---- 시행하게 -----.

② 제안 시행부서-----

----- 제안 업무-----
----- 제안 시행 계획--
-----.

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)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22조(제안의 확산) 의장은 채택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23조(실시성과의 측정) ①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.

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제안 시행부서-----
----- 시행
할 -----
-- 때는 -----
-----.

제21조(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) -- 채택 제안이 직접 시행
하기-----
----- 시행할 -
-----.

제22조(제안의 확산) ---- 채택
제안-----
----- 적용할 수
있다고 -----

----- 시행
을 -----.

제23조(시행 성과의 측정) ① 제안
시행부서-----
----- 시행 성과-----
-----.

② 제안 시행부서-----
----- 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
를 -----
---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
에 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----
-----.

제24조(관리기간) 의장은 채택제
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
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
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
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
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
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
·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6조(위임사항) (생략)

제27조(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)
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
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
제안 규정」(중앙우수제안에 관
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
다.

제24조(관리 기간) ----- 채택 제
안-----

----- 공무원 제안-----

-----.

제26조(위임 사항)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)

----- 제외한다) 을 -----
--.